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광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정봉

전화 062-231-4330 / 팩스 0502-193-7661

## 보도자료

2022. 4. 13.(수)

### 제 목

## 「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」 수사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● 광주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장운영)는, '22. 1. 11. 발생한 '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건'을 수사하여 총 14명(구속 6, 불구속 5, 법인 3)을 업무상 과실치사상, 주택법위반,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기소하였음

- 원청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5명(구속 3명), 하청 현장소장 등 하청 직원 3명(구속 2명), 총괄감리원 등 감리 직원 3명(구속 1명), 법인 3곳(양벌규정)

● 광주지검은 사고 직후 수사협력단(단장 차장검사)을 편성하고, 경찰·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사건 사고가 원청·하청·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(人災)라는 점을 밝혀냄

● 관련자들의 과실이 중대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의 수사·공판 과정에서 사고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

※ 이 사건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, 위 법 적용사안이 아님

## I 공소사실 요지

● '22. 1. 11. 광주 서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중 ① 구조검토 없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, ②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, ③ 콘크리트 품질·양생 부실

관리의 업무상 과실로 39~23층 건물이 붕괴되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손괴 등을 일으켜 6명 사망, 1명 부상 **【업무상과실치사·치상, 주택법위반, 건축법위반 등】**

## II 수사 경과

- '22. 1. 1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붕괴사고 발생, 광주지검 '수사협력단' 편성
- '22. 3. 14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, 사고원인 발표
- '22. 3. 17.~24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청 직원 3명, 하청 직원 2명, 감리 1명 각 구속
- '22. 3. 25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청 현장소장 등 9명 사건 송치
- '22. 3. 31.~4. 1.              하청 5명, 감리 4명 사건 송치
- '22. 4. 13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청 현장소장 등 구속 기소 6명, 불구속 기소 8명

※ 구속 기소(원청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3명, 하청 직원 2명, 감리 1명), 불구속 기소(원청 직원 2명, 하청 직원 1명, 감리 2명, 법인 3곳)

## III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, 광주지검 '수사협력단'을 편성하고, 신속한 사전 협의, 법리 검토 지원, 원활한 자료 공유 및 공조 수사 조율 등 경찰·노동청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붕괴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에 주력하였음
-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, 하청, 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인재(人災)라는 사실을 밝혀내고, 원청 현장소장, 하청 현장소장 등을 포함한 6명을 구속 기소하고, 5명을 불구속 기소,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광주지검은 향후 수사,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, 노동청과 협력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☑